

◆ 한국환경분석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8. 7.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환경분석학회 (이하 '학회') 논문지에 투고 및 게재되는 연구결과가 사회 및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 윤리를 손상하지 않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

1.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며 또한,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2. 논문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화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다른 국내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투고 될 수 없다.
4. 논문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제2조의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3.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징계조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이외 별도의 징계조치를 위원회는 제안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논문 게재를 취소
2. 부정행위자의 논문투고를 일정기간 제한
3. 부정행위자의 회원자격정지 및 박탈
4. 학회 홈페이지에 부정행위사실 공고

제6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